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678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6789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225755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차종선, 진현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피고, 항소인1. J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계성

2. K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계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

담당변호사 박철흥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배수진

변론 종결2022. 7. 21.

판결 선고2022. 10. 27.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3. 선고 2020가단22575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분의 330지분에 관하여"로 경정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J와 L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분의 330지분에 관하여 2020.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J는 L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분의 33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5. 21. 접수 제300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K은 피고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분의 13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7. 2. 접수 제38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제1심 판결문 제3쪽 기재 표 중 원고 F 부분)의 최초 대여일 "2019. 11.경"을 "2020. 5.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3행(제1심 판결문 제3쪽 기재 표 중 원고 I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9. I	2020. 5.경	66,000,0001) 원고 I는 2019. 5.경부터 L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I가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I는 2020. 5. 7.부터 2020. 5. 11.까지 L에게 합계 6,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의 "1,089,000,000원"을 "1,065,00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의 가항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00분의 330지분에 관하여"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규

판사신미진

판사박미영

별지

1) 원고 I는 2019. 5.경부터 L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I가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I는 2020. 5. 7.부터 2020. 5. 11.까지 L에게 합계 6,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